사전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)에 따라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- **모든 제출서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**
-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또는 "상세"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공급자격 적격 여부 확인 중 아래 서류 외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52조제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•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 (본인)	• 용도 : 위임용 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
	○		위임장	–	•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